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진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-9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. 10.

발 의 자 : 김진천, 김영미, 정혜경  
권영숙, 서종수, 장덕준,  
채우진, 최은하, 한일용

## 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위탁 및 운영·수리 비용지원 및 지원기준과 절차 (안 제4조 ~ 제6조)
- 라. 수리센터 이용 시 편의제공 (안 제7조)
- 마. 위탁의 취소와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 (안 제8조 ~ 제9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관계법령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

5. 예산조치 : 필요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임

나. 입법예고 : 필요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휠체어 등”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.
3. “지원대상자”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4조(위탁 및 운영·수리비용 지원)**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)**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하며,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·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.

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.
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.

**제6조(수리비용 지원절차)**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,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

1.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
2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

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센터는 수리를 이행한다.

**제7조(이용편의 제공)**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
2.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
3.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

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위탁의 취소 등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2.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탁받을 수 없다.
- ③ 센터 또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지도감독)**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수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【별지 서식】

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					
1. 인적사항(해당란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)					
성 명		생년월일		성 별	
연 락 처		장애유형		장애등급	
주 소 지	서울특별시 마포구				
수급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				
2. 수리신청내용(해당란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)					
출장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내방수리	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장수리		
유 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수동휠체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휠체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스쿠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 )				
수 리 필요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타이어 및 튜브 <input type="checkbox"/> 모터 및 브러쉬 <input type="checkbox"/> 충전기 <input type="checkbox"/> 브레이크 및 기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컨트롤러 및 배선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체수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 )				
수 리 와 관련된 주의사항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2em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2em; font-weight: bold;">마포구청장 귀하</p>					
※ 구비서류(해당란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):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증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증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계층확인서					수수료
					없음

# 관 계 법 령

## 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18.6.20.] [법률 제15270호, 2017.12.19., 일부개정]

**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**제18조(의료와 재활치료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